

부산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2가단3234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10. 25.

판 결 선 고 2023. 12. 6.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1,354,095원 및 그 중 10,584,145원에 대하여 2021. 11. 10.부터 2022. 10. 26.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21. 6. 14. 체결된 매매계약은 11,354,09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11,354,0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가.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음(단 피고 A에 대한 부분에 한함)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8. 3. 12. 피고 A가 D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 A가 2021. 7. 10. D은행에 대한 채무 상환을 연체하여 D은행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가 2021. 11. 10. 피고 A의 D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관련 법령과 원고,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는 그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다. 피고 A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는 구상채권 보전 비용은 현재 769,950원이다.

피고 A는 2021. 6. 14.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2021. 7. 9.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는 2021. 7. 9. E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34,2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

피고 B는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 등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161,000,000원,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161,000,000원의 범위내로 원고가 구하는 11,354,095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

별지